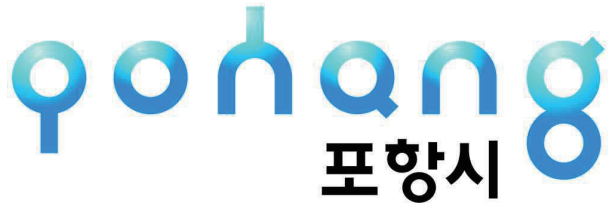


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# 포항시보

제1090호 2016. 4. 19(화)

### ◀ 입법예고 ▶

-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(제2016-25호) ..... 2
- 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제2016-26호) .....12

### ◀ 고 시 ▶

-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(제2016-36호) ..... 18
-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(포항시도시건설사업소 제2016-4호) ..... 26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## 입 법 예 고

### 포항시 공고 제2016 - 25호

「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,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6년 4월 12일

포 항 시 장

###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

#### 1. 제정이유

- 과메기의 영양학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, 역사성·우수성 등을 홍보하기 위한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이 건립됨에 따라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운영시설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나. 관람금지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- 다. 변상조치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라.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자문위원회 구성(안 제10조~제17조)
- 마.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8조~제24조)

#### 3. 관련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- 「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
- 「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

#### 4. 조례안 : 붙임

#### 5. 입법예고 : 2016. 4. 12. ~ 2016. 5. 3.(22일간)

#### 6. 의견제출

「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(참조:수산진흥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,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기타 필요한 사항 등

라. 참고사항

- 보내실 곳 : 포항시청 수산진흥과(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)
- 전화 054)270-2857, fax 054)270-2740

#### 7. 기 타

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(<http://www.ipohang.org>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 건	비 고

##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포항의 지역특산품인 과메기의 영양학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, 역사성·우수성 등을 널리 알려 계승·발전시키고자 건립한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 및 위치)** ① 명칭은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(이하 “문화관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② 문화관의 위치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용주로7번길 30 일원에 둔다.

**제3조(운영시설 및 기능)** 문화관의 운영시설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전시시설 : 과메기 전시, 어촌문화체험, 해양체험, 영상체험, 관광 명소 및 먹거리 소개 등
2. 판매시설 : 카페, 기념품 및 지역특산물 판매 등
3. 연구시설 : 과메기의 영양학적 가치 연구 및 식품 안전성 관리 등

**제4조(개관 및 휴관)** ① 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.

1. 1월 1일, 설날 및 추석
2. 매주 월요일, 다만, 월요일이 공휴일(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)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.
3. 그 밖에 포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을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**제5조(관람시간 등)** ① 문화관의 관람시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시시설 : 09:00부터 18:00까지
2. 판매시설 : 09:00부터 18:00까지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,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입장할 수 있다.

**제6조(관람료)** 문화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. 다만, 전시시설의 일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**제7조(관람의 금지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.

1. 전염성 질환자, 정신질환자 및 술에 취한 사람
2.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
3.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미만의 어린이
4.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**제8조(행위의 제한)** ① 관람자는 문화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1. 흡연, 음주 또는 고성방가
2. 문화관 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
3.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
4.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
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위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고,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.

**제9조(변상조치 및 손해배상)** ① 관람자 및 수탁자가 문화관의 시설물과 판매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
② 관람자가 전시품 등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과 협의를 통하여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** ① 시장은 문화관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운영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문화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
2. 문화관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
3. 문화관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**제11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.

1. 문화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2. 문화관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이 가능한 전문인사 및 관계 공무원
3. 그 밖에 시장이 문화관 운영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**제12조(위원의 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관계공무원의 경우 그 해당 보직 기간으로 하고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13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14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간사)**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문화관 업무 담당이 된다.

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.

**제16조(위원의 위촉 해제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장기간 필요한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2.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
3.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의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**제17조(수당 등)**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18조(관리·운영의 위탁)** ① 시장은 문화관을 직접 관리·운영한다. 다만, 문화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



정할 때에는 「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항시의회 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시설을 위탁 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.

**제19조(위탁기간)**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, 재위탁, 재계약에 관하여는 「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20조(수탁자의 의무)** ① 수탁자는 문화관 관리자로서 수탁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안전사고 등 수탁재산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21조(위·수탁협약)** 제18조에 따른 시설 운영의 위·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·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.

**제22조(위·수탁계약의 해제)**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·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
2. 수탁자가 위·수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
3. 그 밖에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문화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23조(재정지원)** ① 시장은 문화관의 관리·운영과 사업수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.

② 시장은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,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**제24조(지도·감독)** ① 시장은 문화관의 관리·운영 상황을 수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**제25조(사업계획 및 결산)** ① 문화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.

② 문화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③ 문화관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·세출결산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26조(준용)**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「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, 「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를 준용한다.

**제27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포항시 공고 제2016-26호

「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6. 4. 15.

포 항 시 장

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대한상공회의소 『2015년 전국규제지도』 평가결과 B등급으로 나타난 항목 중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를 조정하여 규제를 개선하여 시민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 법령 개정 : 「도로법」 제76조 ⇒ 「도로법」 제91조(안 제1조, 제3조)
- 나.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를 조정
  - “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한다.”
  - ⇒ “원인자부담금은 공사 착수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”
- 다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자구수정

3. 관련법령

- 「도로법」

4. 조례안 : 붙임

5. 예고기간 : 2016. 4. 15 ~ 2016. 5. 5(21일간)

6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(참조 : 건설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- 라. 참고사항

조례안 내용	의견	비고

※ 의견제출 및 문의처 : 포항시 남구 시청로 1(790-722)  
포항시청 건설과(전화 270-3453, FAX 270-3420)

7. 기 타

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(<http://www.ipohang.org>)"입법예고"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## 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로법」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의 손괴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법 제2조에 규정한”을 “「도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도로 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”을 “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(이하 “원인자부담금”이라 한다)”로, “손괴자부담금”을 “손괴자부담금(이하 “손괴자부담금”이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도로 복구공사”를 “도로복구공사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본문 중 “시장”을 “포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도로 복구공사”를 “도로복구공사”로, “때에는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때에는 법 제91조에 따라”로, “원인자 부담금”을 “원인자부담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항에 따른”으로, “공사시”를 “공사 시”로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, “단가는”을 “단가를”로 한다.

제3조제4항에서 “선납하여야”를 “공사 착수 전까지 납부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도로 손괴자부담금”을 “손괴자부담금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원인 행위”를 “원인행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”를 “단서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단서 중 “복구외”를 “복구 외”로, “원인자로 하여금”을 “원인자에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로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(이하 "원인자부담금"이라 한다) 및 도로의손해자부담금(이하 "손해자부담금"이라 한다)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로법」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의 손해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"도로"라 함은 법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, 공작물,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.</li> <li>2. ~ 4. (생략)</li> <li>5. "부담금"이라 함은 도로 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해자부담금을 말한다.</li> <li>6. "원인자"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(이하 "타공사 또는 타행위"라 한다)로 인하여 도로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(이하 "원인자"라 한다) 및 도로를 손해한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(이하 "손해자"라 한다)를 말한다.</li> </ol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----- 「도로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-----.</li> <li>2. ~ 4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5. -----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(이하 "원인자부담금"이라 한다) -- 손해자부담금(이하 "손해자부담금"이라 한다)-----.</li> <li>6. ----- ----- 도로복구공사 -----.</li> </ol>
<p>제3조(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) ① 시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해하여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게</p>	<p>제3조(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) ① 포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----- ----- 도로복구공사-----</p>

될 때에는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. 다만,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간접손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, 직접손해부분의 복구공사 표준단면은 별표 2, 도로굴착 및 복구 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여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.

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.

⑤ 원인가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항에 의거 결정된 복구비 상당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⑥ 도로 손해자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.

⑦ (생략)

제4조(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)

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환부하지

때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-----

원인자부담금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2항에 따른 -----

--- 공사 시 ----- 따라  
----- 단가를

④ ----- 공사 착수 전까지 납  
부하여야-----.

⑤ ----- 따라 -----

⑥ 손해자부담금-----

⑦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)

① -----



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.

1. 원인자가 원인행위 착수 이전에 그 원인 행위를 포기하였을 때

2.·3. (생략)

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「포항시 재무회계 규칙」에 따른다.

제5조(복구공사의 이행) ① 도로 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손괴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 중 소규모 굴착지 복구의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 단서에 의거 원인자가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행한다.

----. 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--  
-----  
-----.

1. -----  
-- 원인행위-----

2.·3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단서에 따른 -----  
-----  
-----.

제5조(복구공사의 이행) ① -----  
-----  
-----.  
--- 복구 외 -----  
----- 원인자에게 -----  
-----.

② ----- 따라 -----  
-----  
-----.

고 시

포항시 고시 제2016 - 36호

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

포항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,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. 4. 11.

포 항 시 장

- 1. 사업시행지 :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313번지 일원
  -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   - 종 류 : 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)
    - 명 칭 : 종로1류180호선(초곡지구 진입도로)
  - 3.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
    - 주 소 :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44길 7
    - 성 명 :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
  - 4. 사업계획 내용
    - 도로개설 : L = 315m, B = 20~27m, A = 당초 17,477㎡ → 변경 13,980㎡
    - 사업기간
      - 당 초 : 2015.4.30 ~ 2016.12.31.
      - 변 경 : 2015.4.30 ~ 2017.6.30.
  - 5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자치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: 불임
  - 6.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- ※ 관계 편입토지조서, 도면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,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(☎054-270-347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 (당초 지번)	지목	면적		토지소유자		소유권 외의 권리명세			비 고
				공부상 면적	편입 면적	성명 또는 명칭	주소	성명 또는 명칭	주소	권리의 종류 및 내용	
1	북구 홍해읍 초곡리	998	천	118,837	311	농림축산 식품부					
2	북구 홍해읍 초곡리	998-10 (998)	천	850	850	농림축산 식품부					
3	북구 홍해읍 초곡리	998-11 (998)	천	3,724	348	농림축산 식품부					
4	북구 홍해읍 초곡리	998-2 (998)	답	871	11	기획 재정부					
5	북구 홍해읍 옥성리	300-1	답	1,247	133	탁상수	포항시 북구 홍해읍 마산리 109				
6	북구 홍해읍 옥성리	300-4 (300-1)	답	647	647	탁상수	포항시 북구 홍해읍 마산리 109				
7	북구 홍해읍 옥성리	300-5 (300-1)	답	125	125	탁상수	포항시 북구 홍해읍 마산리 109				
8	북구 홍해읍 옥성리	300-2	임	393	54	탁상수	포항시 북구 홍해읍 마산리 109				
9	북구 홍해읍 옥성리	301-3	답	4,272	1,154	탁상수	포항시 북구 홍해읍 마산리 109				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 (당초 지번)	지목	면적		토지소유자		소유권 외의 권리명세			비 고
				공부상 면적	편입 면적	성명 또는 명칭	주소	성명 또는 명칭	주소	권리의 종류 및 내용	
10	북구 홍해읍 옥성리	301-8 (301-3)	답	704	704	탁상수	포항시 북구 홍해읍 마산리 109				
11	북구 홍해읍 옥성리	301-4	임	577	158	탁상수	포항시 북구 홍해읍 마산리 109				
12	북구 홍해읍 옥성리	301-9 (301-4)	임	201	201	탁상수	포항시 북구 홍해읍 마산리 109				
13	북구 홍해읍 옥성리	301-10 (301-4)	임	35	22	탁상수	포항시 북구 홍해읍 마산리 109				
14	북구 홍해읍 옥성리	310	답	2,088	213	박재석	서울시 강동구 문정동 1문정아파 트29동 205호				
15	북구 홍해읍 옥성리	310-1 (310)	답	5	5	박재석	서울시 강동구 문정동 1문정아파 트29동 205호				
16	북구 홍해읍 옥성리	312-1	답	2,086	453	박재길	울산시 중구 천하동 641 일산아파트 15동 602호				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 (당초 지번)	지목	면 적		토 지 소 유 자		소 유 권 외 의 권 리 명 세			비 고
				공부상 면 적	편입 면적	성명 또는 명칭	주 소	성명 또는 명칭	주 소	권리의 종류 및 내 용	
17	북구 흥해읍 옥성리	312-4 (312-1)	답	722	722	박재길	울산시 중구 천하동 641 일산아파트 15동 602호				
18	북구 흥해읍 옥성리	312-5 (312-1)	답	203	186	박재길	울산시 중구 천하동 641 일산아파트 15동 602호				
19	북구 흥해읍 옥성리	312-6 (312-1)	답	113	111	박재길	울산시 중구 천하동 641 일산아파트 15동 602호				
20	북구 흥해읍 옥성리	312-2	답	922	53	박재석	서울시 강동구 문정동 1문정아파 트29동 205호				
21	북구 흥해읍 옥성리	312-7 (312-2)	답	241	241	박재석	서울시 강동구 문정동 1문정아파 트29동 205호				
22	북구 흥해읍 옥성리	312-8 (312-2)	답	364	143	박재석	서울시 강동구 문정동 1문정아파 트29동 205호				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 (당초 지번)	지목	면적		토지소유자		소유권 외의 권리명세			비 고
				공부상 면적	편입 면적	성명또 는명칭	주소	성명 또는 명칭	주소	권리의 종류 및 내용	
23	북구 흥해읍 옥성리	313	답	1,879	685	이성우	포항시 남구 해도동 2	농협 은행 주식 회사	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	근저당	
24	북구 흥해읍 옥성리	313-1 (313)	답	954	954	이성우	포항시 남구 해도동 2	농협 은행 주식 회사	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	근저당	
25	북구 흥해읍 옥성리	313-2 (313)	답	1,018	141	이성우	포항시 남구 해도동 2	농협 은행 주식 회사	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	근저당	
26	북구 흥해읍 옥성리	317-1	임	227	37	채석관	흥해읍 마산동 209				
27	북구 흥해읍 옥성리	317-4 (317-1)	임	77	77	채석관	흥해읍 마산동 209				
28	북구 흥해읍 옥성리	317-5 (317-1)	임	7	7	채석관	흥해읍 마산동 209				
29	북구 흥해읍 옥성리	317-2	답	258	77	김형식	흥해읍 마산리 142-3				
30	북구 흥해읍 옥성리	317-3	답	277	252	김형식	흥해읍 마산리 142-3				
31	북구 흥해읍 옥성리	317-6 (317-3)	답	438	438	김형식	흥해읍 마산리 142-3				
32	북구 흥해읍 옥성리	317-7 (317-3)	답	154	89	김형식	흥해읍 마산리 142-3				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 (당초 지번)	지목	면적		토지소유자		소유권 외의 권리명세			비 고
				공부상 면적	편입 면적	성명 또는 명칭	주소	성명 또는 명칭	주소	권리의 종류 및 내 용	
33	북구 홍해읍 옥성리	318-2	답	404	177	이상모	홍해읍 옥성동 251-9				
34	북구 홍해읍 옥성리	318-4 (318-2)	답	238	238	이상모	홍해읍 옥성동 251-9				
35	북구 홍해읍 옥성리	318-5 (318-2)	답	46	37	이상모	홍해읍 옥성동 251-9				
36	북구 홍해읍 옥성리	318-3	답	223	123	이상모	홍해읍 옥성동 251-9				
37	북구 홍해읍 옥성리	318-6 (318-3)	답	177	177	이상모	홍해읍 옥성동 251-9				
38	북구 홍해읍 옥성리	318-7 (318-3)	답	142	59	이상모	홍해읍 옥성동 251-9				
39	북구 홍해읍 옥성리	335	답	142	137	탁해석	북구 양덕동 양덕2차 이편한세 상 204-180 4				
40	북구 홍해읍 옥성리	335-1 (335)	답	251	251	탁해석	북구 양덕동 양덕2차 이편한세 상 204-180 4				
41	북구 홍해읍 옥성리	335-2 (335)	답	40	40	탁해석	북구 양덕동 양덕2차 이편한세 상 204-180 4				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 (당초 지번)	지목	면적		토지소유자		소유권 외의 권리명세			비 고
				공부상 면적	편입 면적	성명 또는 명칭	주소	성명 또는 명칭	주소	권리의 종류 및 내용	
42	북구 흥해읍 옥성리	336	답	102	10	탁해석	북구 양덕동 양덕2차 이편한세 상 204-1804				
43	북구 흥해읍 옥성리	337	답	3,003	208	탁해석	북구 양덕동 양덕2차 이편한세 상 204-1804	흥해 새마을 금고	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내리 35-6	근저당	
44	북구 흥해읍 옥성리	337-1 (337)	답	399	399	탁해석	북구 양덕동 양덕2차 이편한세 상 204-1804	흥해 새마을 금고	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내리 35-6	근저당	
45	북구 흥해읍 옥성리	337-2 (337)	답	195	181	탁해석	북구 양덕동 양덕2차 이편한세 상 204-1804	흥해 새마을 금고	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내리 35-6	근저당	
46	북구 흥해읍 옥성리	350-1	유	49,709	90	농림축 산식품 부					
47	북구 흥해읍 옥성리	395	구	676	118	농림축 산식품 부					
48	북구 흥해읍 옥성리	395-1 (395)	구	50	50	농림축 산식품 부					
49	북구 흥해읍 옥성리	395-2 (395)	구	56	56	농림축 산식품 부					
50	북구 흥해읍 옥성리	395-3 (395)	구	300	57	농림축 산식품 부					

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 (당초 지번)	지목	면 적		토 지 소 유 자		소 유 권 의 의 권 리 명 세			비 고
				공부상 면 적	편입 면적	성명 또는 명칭	주 소	성명 또는 명칭	주 소	권리의 종류 및 내 용	
51	북구 흥해읍 옥성리	395-4 (395)	구	842	42	농림축 산식품 부					
52	북구 흥해읍 옥성리	396	도	1,081	26	농림축 산식품 부					
53	북구 흥해읍 옥성리	398	천	16,608	442	국토 교통부					
54	북구 흥해읍 옥성리	398-2 (398)	천	651	651	국토 교통부					
55	북구 흥해읍 옥성리	398-3 (398)	천	11,280	788	국토 교통부					
56	북구 흥해읍 옥성리	334	답	4,248	21	손중태	포항시 북구 송라면 광천리 726-12				
합 계				235,379	13,980						

포항시 도시건설사업소 고시 제2016 - 4호

##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

포항 도시계획시설(도로)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인가하고,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. 4. 12

### 포 항 시 장

1. 사업 시행지 :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 - 종 류 : 도시계획시설 사업(도로 : 소로2류8호선)
  - 명 칭 : 도시계획도로 소2-8 개설
3.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
  -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     포항시장
4. 사업계획 내용

사업명	위 치	사 업 내 용	시행기간	사업시행자
도시계획도로 소2-8 개설	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282-6번지 일원	도로 개설 (L=32m, B=8m)	실시계획인가고시 ~ 2017. 12.31	포항시장

5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

▶ 소로2류8호선(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)

① 토지조서

일련 번호	토지 소재지		지 목	지 적 (㎡)	편 입 면 적 (㎡)	소 유 자		관 계 인			비고
	리	지 번				주 소	성 명	성명	주소	권리관계	
계		9 필		664	304						
1	동해면 신정리	282-6	답	37	37	대구광역시 두류공원로 5길 6-29	최*이	최*순 대*은행			근저당
2	동해면 신정리	282-7	답	89	89	경기도 화성시 역골동로 70	방*규				
3	동해면 신정리	282-8	답	115	115	경기도 화성시 역골동로 70	방*규외 2	홍해 농*			근저당
4	동해면 신정리	282-2	답	63	63	포항시 남구 대도동 160-24	김*성				

※ 관계 토지조서, 도면 등은 포항시청 도로과 및 남구청 건설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, 기타 상세한사항은 포항시청 도로과(☎054-270-344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